



TOUR 저작권 약관

가. 개괄

모든 저작물은 사무국 인원의 개인 제출용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사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무국 일원(이하 작업자)은 자신의 작업물에 관하여 유출, 2차 저작물, 파기 등 통상적으로 저작자가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관리 책임이 존재한다.

저작자와 TOUR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위원장(이하 위원장) 혹은 투표를 통해 결정된 조직위원장 대리(이하 대리) 및 조직위원(이하 위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 실연권자 혹은 실연권자와 계약 관계로 묶여있지 않은 인원들의 모든 저작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저작물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적 사용은 절대 금지하며 어떠한 연유로도 허용치 아니한다.

해당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수익은 사무국 인원들에게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균등 분배 시 현금이 아닌 이에 준하는 현물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국내 저작권법에 의거한 침해 사유 발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률대리인에게 위임될 수 있다.

나. 조직위원회의 선정

(1) TOUR조직위원의 선정

- 조직위원은 사무국에서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원들로 선발하여 구성한다.
- 부문은 기획, 디자인, 연출, 언리얼엔진, 유니티, 음악, 애니메이션, 홍보, 일러스트, 모델링을 대표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 선정된 조직위원은 아래와 같다.

조직위원장: 임경섭

조직위원: 커피좋아, KOYO, 고세구, Ojik, 현웅(초은하), 진흙인형정원, KENA, 김철왕, 박보봉, 다진마늘, wim, Djinis, Samsa, Sochiru, 나노

(2) 상임 위원회

- 상임 위원회는 사무국의 총괄 3인과 주최 측인 고세구로 구성한다.

- 조직위원장 부재 시 상임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임위원의 장기 부재로 인한 재선출 시 조직위원 중 투표로 진행한다.

조직위원장: 임경섭

상임위원: 커피좋아, KOYO, 고세구

(3) 부문별 조직위원의 대리

- 조직위원의 부재 시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진행할 수 있다.
- 조직위원의 부재 시 위원장은 해당 조직위원을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부문별 조직위원

- 부문별 조직위원은 연관된 인원들을 기반으로 3인으로 구성한다.

기획 : 커피좋아, KOYO, 고세구

디자인 : 커피좋아, KOYO, 박보봉

연출 : 커피좋아, KOYO, 고세구

언리얼엔진 : KOYO, Ojik, 현웅

유니티 : 진흙인형정원, 커피좋아, 현웅

음악 : 고세구, KENA, 김철왕

애니메이션 : 현웅, Djinis, 고세구

홍보 : 커피좋아, Sochiru, 나노

일러스트 : KOYO, 다진마늘, wim

모델링 : Samsa, 다진마늘, wim

다. 실연권자의 선정

(1) 공연 실연권자

- 공연 실연권자는 연출, 기획, 음악·음향을 담당한 책임자에 한하여 진행한다.

기획 : 임경섭, 커피좋아

연출 : KOYO, 현웅, Ojik

음악·음향 : KENA, 김철왕

(2) 영상 실연권자

- 영상 실연권자는 아티스트 "고세구"에 한정한다.

라. 저작물의 정의

(1) 3D 모델링

- 모든 에셋을 제외한 모델링
- 의상 디자인과 모델링

- 공연 스테이지
- TOUR de SEGU
- 금지 높은 아이돌에 사용한 모델링

(2) 음악

- Instruments
- Main theme
- Set-List

(3) 일러스트

- 컨셉아트
- 스토리보드
- 아트워크
- 굿즈 디자인

(4) 디자인

- 브랜딩
- 홍보물
- Behance

마. 저작물의 관리

(1) 저작물의 관리

- 저작물에 참여한 저작자와 해당 부문의 조직위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저작물을 삭제해야 한다.
- 이때 저작물은 상기 명시된 저작물 외에도 언리얼엔진 혹은 유니티 프로젝트가 포함된 SVN, 음악 혹은 영상과 유관된 협업프로그램, 독립된 아바타 및 의상 등 1인 작업이 아닌 모든 저작물을 포함한다.
- 위원회 혹은 사무국에서 제작된 미디어 파일은 유관 상임 위원을 제외한 모든 일원은 소유하지 않는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상황은 조직위, 사무국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인의 책임임을 인지한다.

제1조 사무국 인원의 의무

- 저작물에 관하여 유출, 2차 저작물, 파기 등 통상적으로 저작자가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관리 책임이 존재한다.
- 저작물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등 상임위의 승인 없이 그 이용 권한, 기타 계약상 지위 등 저작권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작업자는 자신의 작업물 및 무단 사용을 발견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그 즉시 TOUR조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상단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제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 사무국 내부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조직위에 귀속한다.
- 콘텐츠 소비자가 TOUR를 통하여 얻은 정보(사진 등등)를 조직위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및 기타 방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이용자가 게시한 조직위 내 게시물의 저작권은 조직위에 귀속된다.
- 조직위는 이용자의 사전 이용을 허락받고 이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일체를 홍보 등을 위하여 복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게시물의 삭제

-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조직위는 해당 게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게시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
 1. TOUR 또는 다른 이용자 혹은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경우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에 게재하는 경우
 6.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해당 게시판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7. 본 약관 및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8.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TOUR는 전항의 각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게시 중단할 때 해당 내용을 작업자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 작업자와 이용자는 해당 게시물이 실수로 삭제 또는 게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TOUR 조직위원회에 3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책임의 한계

- 조직위는 중개자로서 이미 생산된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매개한다.
- 작업자 및 이용자(TOUR 홈페이지 가입자, 약물관 내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해당 정보의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작성 또는 제작한 정보이기에 홈페이지에서 매개된 정보라도 그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또는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를 작성하였거나 제작한 당사자가 담보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TOUR은 홈페이지 또는 악물원을 매개로 전달되었더라도 TOUR조직위원회가 작성 또는 제작하지 않은 정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TOUR 측에서 해당 정보를 “있는 그대로” 매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확성, 신뢰성 또는 적법성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TOUR은 하이퍼링크된 서비스 또는 게시물을 통하여 제3자가 광고하거나 제공하는 콘텐츠에 관한 내용이나 의견을 보증, 승인하지 않으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이용자가 위 정보를 신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관해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였거나 TOUR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TOUR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분쟁의 해결

- 조직위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 조직위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추후 통보할 수 있다.
- 작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을 3일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일이 지날 경우 조직위원회는 책임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6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규약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을 따른다.
- TOUR 홈페이지와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TOUR조직위원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TOUR조직위원회 상임위원의 거소 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